

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(박강산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580
----------	-----

발 의 년 월 일: 2023년 03월 27일

발 의 자: 박강산 의원(1명)

찬 성 자: 강동길, 김 경, 김영철,
김원태, 문성호, 민병주,
송재혁, 유정인, 이상욱,
이소라, 이용균, 이원형,
임종국, 한 신, 홍국표
의원(15명)

1. 제안이유

- 학교폭력 문제의 예방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 중 하나인 학부모 교육을 규정하여, 학부모의 학교폭력 대처 능력 강화를 통해 학생들의 피해와 가해를 예방하고 올바른 성장을 도모하고자 함.
- 또한 학부모 교육의 의무화 조항은 교육에 참여하는 학부모들의 학내 문제 관심 제고와 궁극적으로 학교폭력의 예방적 효과를 이룰 것으로 예상됨.

2. 주요내용

가. 학부모 교육 내용을 신설함(안 제10조의2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

다. 기타 : 신 구조문 대비표

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0조의2 (학부모 교육) ① 학교장은 법 제15조제2항 및 제5항,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6호에 따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을 위하여 학부모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.

1. 가정의 학교폭력 예방기능 강화
2. 청소년의 발달 단계 이해
3. 자녀와의 소통 방법
4. 학교폭력 예방활동 공유
5. 그 밖에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
② 교육감은 교육자료의 보급 등 학교의 장이 학부모 교육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.

③ 학교장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교육에 많은 학부모가 참석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신 설>	<p>제10조의2 (학부모 교육) ① 학교장은 법 제15조제2항 및 제5항,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6호에 따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을 위하여 학부모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가정의 학교폭력 예방기능 강화 2. 청소년의 발달 단계 이해 3. 자녀와의 소통 방법 4. 학교폭력 예방활동 공유 5. 그 밖에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<p>② 교육감은 교육자료의 보급 등 학교의 장이 학부모 교육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.</p> <p>③ 학교장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교육에 많은 학부모가 참석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</p>